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0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008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나576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피고, 피상고인1.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삼성라인 주식회사

판결 선고 2015. 10. 29.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나576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